

제314회 임시회
2012. 9. 21(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9. 21(금)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재종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 2012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9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9월 11일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재종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상위법령과 조례가 상이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법 조항에 맞게 조정
(안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문 홍 열)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업무주관부서인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2012. 8. 9 ~ 8. 28)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개정 내용에 반영하고 있음으로 정당성이 인정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고, “운용관리조례”를 “운용·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사업 : 100분의 1
3.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 : 100분의 1

제3조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각 호 중 “분할납부승인일”을 “분할납부허용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세징수 및”을 “지방세 징수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p>
<p>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100분의 7.5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100분의 7.5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100분의 7.5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분의 1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1 6.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6호에 의한 사업 : 100분의 1 	<p>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사업 : 100분의 1 3.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 : 100분의 1

관련법령 발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②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규모·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⑦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

면적의 합계로 한다.

⑧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⑦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